

---

휴대전화

---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

보안 설정

아니요

---

##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도형 고발

내용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김도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51조(범죄 은닉),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123조(직권남용)

피의자 김도형은 은평경찰서의 주차장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담당으로서  
1.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용"이(첨부, 건설정책과업무.jpg) 자신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연장하며(첨부, 처리기간 연장 통지) 질질끌다가  
급기야는  
2. 전자문서의 "연장 사유를 삭제하고 처리기관 위조"까지 저지르면서(첨부,  
위조.pdf) 또 이송하였기에 고발한다

이는 공전자기록위작 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51조(범인 도피)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왜냐하면 "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씩어 빠진 은평구로 이송하지 말고 니들이 직접  
조사해라" 언급하였듯이,  
국토교통부가 은평구로 이송함으로써, 썩어빠진 은평구청과 은평경찰에 의하여  
묵살된 전력이 있었고  
아래 대법원 판례가 [형법] 제151조 적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엄벌에 처하라, 생활화된 전자 문서의 조작이 판치는 세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 첨부 파일

건설정책과업무.jpg 위조.pdf 연장0401.pdf

---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